

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강선영 · 김기웅
서천호 · 김석기 · 윤상현
성일종 · 추경호 · 김성원
김기현 · 서지영 · 한기호
유상범 · 강명구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, 국무총리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국방부장관, 국가정보원장, 행정안전부장관, 대통령비서실장, 국가안보실장,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,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.

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,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(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”을 “국방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 합동참모의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관계 부처의 장, 합동참모회의(合同參謀會議) 의장 또는”을 “관계 부처의 장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대통 령, 국무총리, 외교부장관, 통일 부장관, <u>국방부장관 및 국가정 보원장과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방부장관, 국가정 보원장 및 합동참모의장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출석 및 발언) 의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부처의 장, <u>합동참모회의(合 同參謀會議) 의장 또는 그 밖</u> 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	제6조(출석 및 발언) ----- ----- <u>관</u> <u>계 부처의 장 또는</u> ----- ----- -----.